

KT&G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설명자료

(주)케이티앤지는 다음과 같이 제3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인재개발원 비전홀
-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보고 1	감사보고
보고 2	영업보고
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의결사항 (부의안건)

제1호	제39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목적사업 추가
· 제2-2호	전자주주총회 도입
· 제2-3호	사외이사 명칭 변경
· 제2-4호	집중투표 규정 정비
· 제2-5호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 제2-6호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 퇴직금지규정 정비
· 제2-7호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 기업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의안번호16966)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 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

2. 의결사항 (부의안건)

제3호	사내이사의 퇴직금지규정 개정의 건 (* 제2-6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제4호	사외이사 노환용 선임의 건
제5호	감사위원회 위원 노환용 선임의 건
제6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승수 선임의 건 (* 제2-5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제7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8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승인의 건 (* 기업에 자기주식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966)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 위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

목차

	Page
제1호 제39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06
· [참고] 2025년 주요 재무성과	07
· [참고] 국내외 최상위 수준 적극적인 주주환원 시행	08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09
· 제2-1호 목적사업 추가	10
· 제2-2호 전자주주총회 도입	10
· 제2-3호 사외이사 명칭 변경	11-14
· 제2-4호 집중투표 규정 정비	14
· 제2-5호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15
· 제2-6호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 퇴직금지규정 정비	15
· 제2-7호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기업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의안 번호16966)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 위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	15
제3호 사내이사의 퇴직금지규정 개정의 건 (* 제2-6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17
· [참고] 사내이사의 퇴직금지규정 개정 상세 내용	18-19

목차

	Page
제4호 사외이사 노환용 선임의 건	20
제5호 감사위원회 위원 노환용 선임의 건	21
제6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승수 선임의 건 (* 제2-5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22
· [참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	23
· [참고] KT&G 이사회 역량 지표 및 필요 역량 현황	24
제7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5
· [참고] 이사 보수한도 변경 필요성	26
제8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승인의 건 (*기업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의안번호16966)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 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	27

01 제39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39기(2025.1.1 ~ 2025.12.31) 연결·별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 주주 여러분들의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요약 연결 손익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매출액	59,088	65,797	+11.4%
영업이익	11,888	13,437	+13.0%
당기순이익	11,650	11,023	-5.4%

주당 배당금

(단위: 원)

구분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반기 배당	1,200	1,400	+16.7%
결산 배당	4,200	4,600	+9.5%
합계	5,400	6,000	+11.1%

이익잉여금 감소/처분 주요 내용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2025년
자기주식의 소각	7,529	7,543
반기 배당	1,353	1,499
결산 배당	4,531	4,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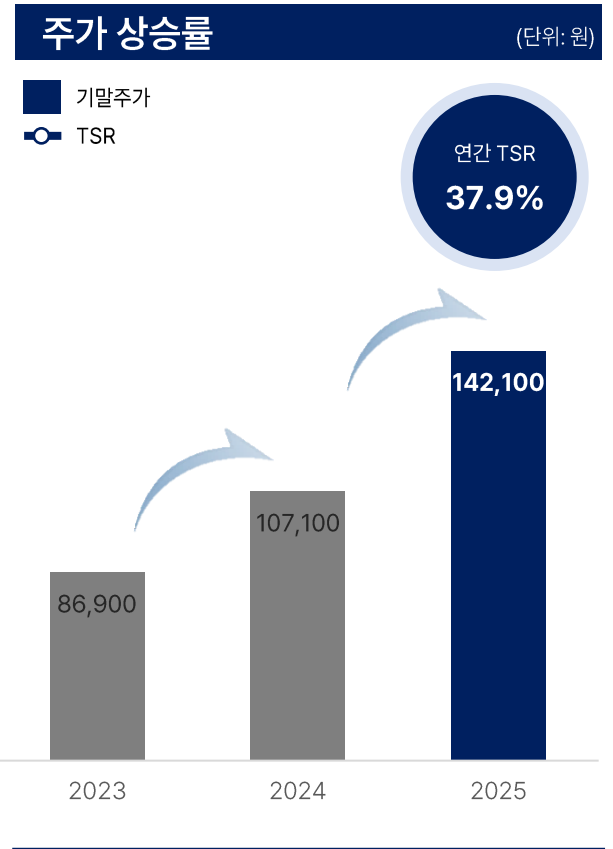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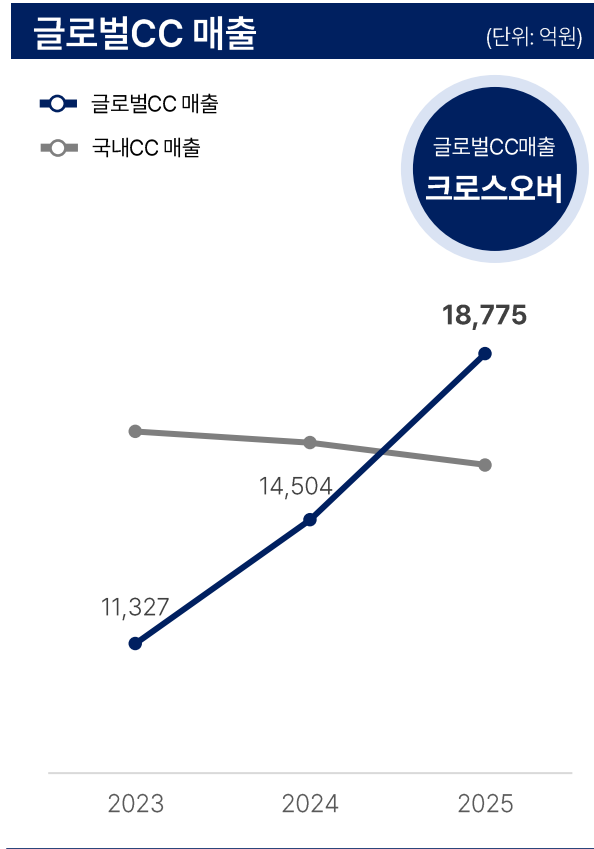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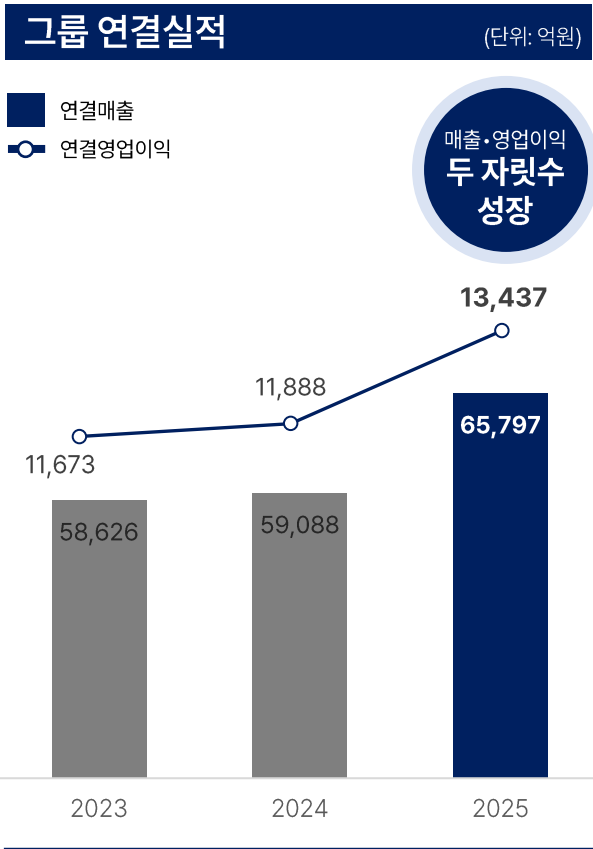
감사보고서

-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포함된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 및 회사 홈페이지에 2026년 3월 4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 감사보고서제출
 - 영문전자공시시스템(<https://englishdart.fss.or.kr>)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당사 홈페이지(<https://ktng.com>) > 투자정보 > 재무정보 > 감사보고서
 - 국문 : <https://ktng.com/ir/financial-info/audit-reports>
 - 영문 : <https://en.ktng.com/ir/financial-info/audit-reports>

* 본 재무제표는 외부감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외부감사 결과 경미한 변경이 생긴 경우 대표이사는 수정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년 주요 재무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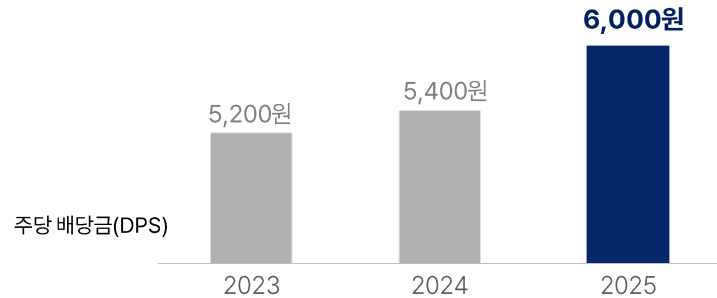
글로벌 중심 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한 결과, **2025년 그룹 연결매출이 6.5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결실적을 견인하는 **해외 사업이 국내 사업을 넘어서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며, 견실한 실적과 강력한 주주환원에 힘입어 KT&G는 기업가치의 성공적인 Re-rating을 이뤄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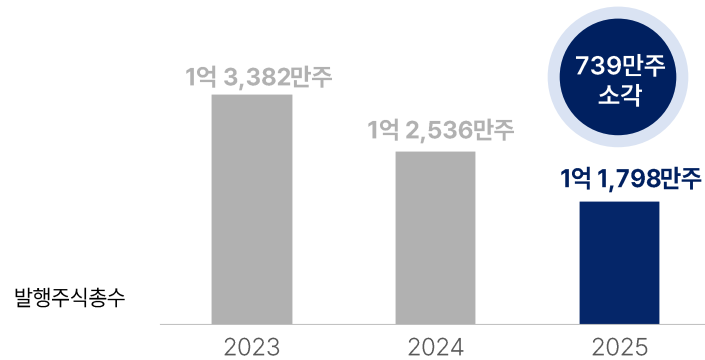
[참고] 국내외 최상위 수준 적극적인 주주환원 시행

KT&G는 지속적인 주당배당금 인상 및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며 발표한 주주환원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55조원(현금환원 1.19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실행하여 국내외 최고수준의 총주주환원율을 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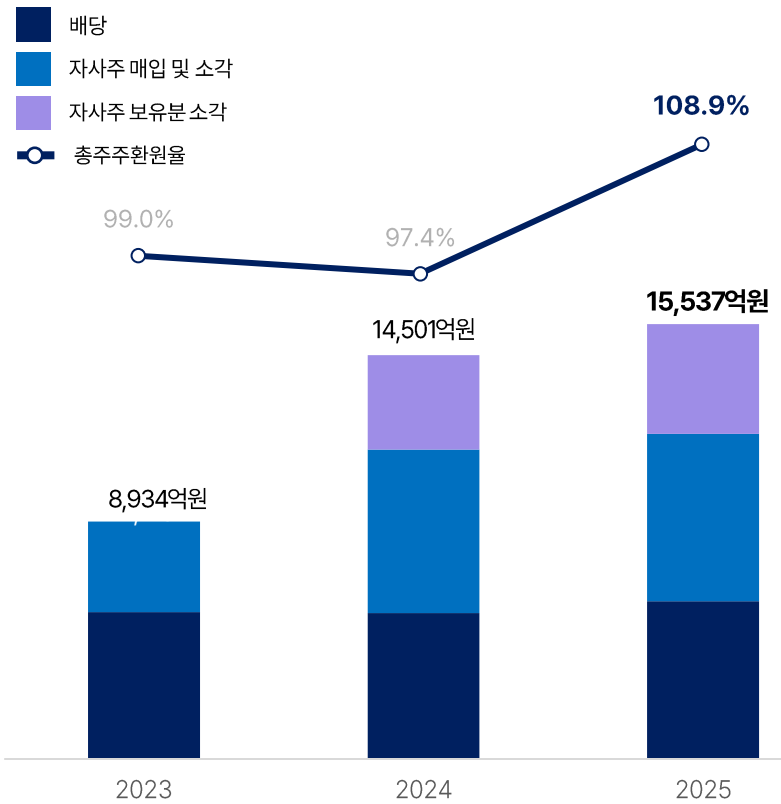
배당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규모 및 총주주환원율



* 총주주환원율: (배당금총액+자사주매입액)/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연결당기순이익

0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목적사업 추가 및 상법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 명칭 변경, 집중투표 규정 정비,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자기주식 보유처분 목적 규정 등을 위해 당사의 정관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전체에 대하여 대해 주주 여러분들의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요약

구분	변경 목적	주요 내용	개정 조항
제2-1호 목적사업 추가	세종공장 상업생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 및 인쇄관련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 	제2조 ①항
제2-2호 전자주주총회 도입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27.1.1.)에 따라 관련 조항 신설 및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회의소집)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총회를 개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제출 	제17조 ④항 제21조 ②항
제2-3호 사외이사 명칭 변경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변경('26.7.23.)에 따라 용어 일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이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명칭 변경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5, 제35조, 제36조
제2-4호 집중투표 규정 정비	집중투표관련상법개정에따라제반규정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투표로 이사 선임 시, 전체 후보자를 대상으로 집중투표 적용 	제26조 ⑥항
제2-5호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 확대(기준인→2인이상, '26.9.10.)에 따라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 	제26조 ⑦항
제2-6호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 퇴직금지규정 정비	사내이사와 경영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통합하여 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이사와 경영임원 퇴직금 규정을 통합하여 '임원 퇴직금지규정'으로 개정하고 적용대상을 경영임원으로 확대 	제31조 제38조 ③항
제2-7호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 상법 반영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유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주식 보유/처분 사유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상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로 규정 	제10조

* 제2-7호 의안은 기업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6966)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 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

**정관 일부 변경
상세 내용
(1/7)**

구분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1호 :목적사업 추가	제2조(목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50. (생략) 51. 제1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연구사업 52. <신설>	제2조(목적) ① ----- -----. 1~50. (현행과 같음) 51. <u>인쇄 및 인쇄관련 사업</u> 52. 제1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연구사업	세종공장 상업생산 추진을 위한 목적사업 추가
제2-2호 :전자주주총회 도입	제17조(총회의 소집) ④ 주주총회는 대표이사인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다만, 사장이 유고한 때에는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신설>	제17조(총회의 소집) ④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⑤ 주주총회는 대표이사인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다만, 사장이 유고한 때에는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조항 신설에 따른 순번 변경
	제21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② ----- -----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	대리권 증명방법 서면 외 전자문서 포함

**정관 일부 변경
상세 내용
(2/7)**

구분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3호 :사외이사명칭 변경	제25조(이사의인원수) 대표이사사장1인과9인 이내의 이사를 두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제25조(이사의인원수) ----- -----, 독립이사-----.	
	제26조(사장 및 이사의 선임 등) ㉔ 사외이사는 제34조의5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상법」제363조의2 제1항 또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제안한 후보자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심사를 거쳐 추천한 사람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㉕ (생략)	제26조(사장 및 이사의 선임 등) ㉔ 독립이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㉕ (현행과 같음)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일괄정비
	제2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되, 사외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7조(이사의 임기) ① ----- -----, 독립이사- -----독립이사--- -----.	
	제30조(이사의 보수) ㉔ 사외이사에게는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이사의 보수) ㉔ 독립이사----- -----.	

**정관 일부 변경
상세 내용
(3/7)**

구분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3호 :사외이사명칭 변경	제32조(사장후보추천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6인 이내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내 임시위원회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회결의에 사장과 사내이사는 참여할 수 없으며,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장후보가 될 수 없다. ②~④ (생략)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물색하고 추천한 사장후보심사대상자를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한 사장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사장후보자를 선정하고 주주총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2조(사장후보추천위원회) ① ----- <u>독립이사</u> ----- ----- ----- ----- ----- ----- ----- ----- -----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 ----- <u>독립이사</u> ----- ----- ----- ----- ----- ----- (현행과 같음)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일괄정비
	제33조(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제, 경영,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고 독립성을 갖춘 자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33조(독립이사의 자격) 독립이사----- ----- ----- ----- -----	

**정관 일부 변경
상세 내용
(4/7)**

구분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3호 :사외이사명칭 변경	제34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일괄정비
	제34조의3(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감사위원회) ① ----- 독립이사----- -----. ② ----- ---- 독립이사-----.	
	제34조의5(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후보의 자격심사 및 추천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4조의5(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이사-----. ②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독립이사----- 2. -----	

**정관 일부 변경
상세 내용
(5/7)**

구분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3호 :사외이사명칭 변경	제35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u>사외이사</u>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생략) ③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u>사외이사</u> 중에서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이사회 의장) ① ----- <u>독립이사</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독립이사</u> ----- -----.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일괄정비
	제36조(이사회 결의)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사장 및 사내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때에는 <u>사외이사</u>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신의 유용 또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를 승인할 때에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6조(이사회 결의) ① ----- ----- ----- ----- <u>독립이사</u> ----- ----- ----- ----- ----- -----.	
제2-4호 :집중투표 규정 정비	제26조(사장 및 이사의 선임 등) ⑥ <u>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u>	제26조(사장 및 이사의 선임 등) ⑥ <삭제>	집중투표 규정정비

정관 일부 변경 상세 내용 (6/7)

구분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5호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제26조(사장 및 이사의 선임 등) ⑦ <신설>	제26조(사장 및 이사의 선임 등) ⑦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제2-6호 :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정비	제31조(이사의 퇴직금) 사장과 사내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따로 정하는 사내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8조(경영임원) ③ 경영임원의 보수와 상여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따로 정하는 경영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1조(이사의 퇴직금)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8조(경영임원) ③ ----- ----- ---,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 퇴직금 규정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
제2-7호 :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제10조 <신설>	제10조(자기주식의 보유·처분)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상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다	상법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처분 목적 규정(**)(**)

(*)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규정은 회사 및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활용 예정이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될 것임

※ 제2-7호 의안은 기업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6966)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 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

정관 일부 변경
상세 내용
(7/7)

구분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p><u><신설></u></p>	<p>부 칙(2026.3.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결권 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 및 제21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5 내지 제27조(제26조 제6, 7항 개정을 제외한다.),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5, 제35조, 제36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개정상법 시행일을 고려한 정관의 적용 시기 경과규정</p>

03 사내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규정 운영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경영임원 및 사내이사 퇴직금지급 규정**을 하나로 통합·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규정 통합 및 개정의 건 전체에 대해 주주 여러분들의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요약

구분	내용
개정방향	임원 퇴직금 제도의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사내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경영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 내용을 통합하여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명칭변경 및 내용개정 * 경영임원/사내이사 퇴직금규정 통합에 따라, 『경영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 폐지
주요내용	① 규정 적용대상을 기존 사장 및 사내이사에서 경영임원으로 확대 ②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운영 관련 조항 신설 ③ 퇴직금지급기준인 근속연수 계산의 세부 기준 명확화

**사내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상세 내용
(1/2)**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명칭: <u>사내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u>	명칭: <u>임원 퇴직금지급규정</u>	명칭변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KT & G 정관 제31조에 의하여 <u>사장 및 사내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및 제38조 제3항에 <u>의하여 사장, 사내이사, 경영임원(이하 통칭하여 '임원'이라 한다)</u> -----.	규정의 적용 대상에 경영임원 포함
제2조(적용범위) <u>사장 및 사내이사</u> 에 대한 퇴직금은 다른 법령 및 정관, 경영계약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u>임원</u> ----- <u>관계</u> ----- --- <u>경영계약서 또는 임용계약서</u> -----.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 범위 변경
<u>제2조의2 <신설></u>	제2조의2(제도운영) <u>임원의 퇴직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운영한다.</u>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관련 내용 추가
제3조(지급기준) <u>사장 및 사내이사</u> 가 1년 이상 재임 후 퇴임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u><신설></u>	제3조(지급기준) ① <u>임원이</u> ----- ----- <u>지급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시 월 미만은 1월로 하여 산정하되, 실제 퇴직금 지급액 계산시에는 근속기간을 일할하여 계산한다.</u>	지급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의 세부 기준 명확화
② <삭제 2010.2.26>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설>	③ 제1항의 재임기간에는 <u>계열회사 임원으로 근속한 기간을 합산(1년 미만의 경우 포함) 할 수 있고, 계열회사 간 임원 전적의 경우 관련 퇴직금은 상호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연금규약 및 퇴직연금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기납입 부담금을 이전하거나 지급 등 처리를 한다</u>	기존 경영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내 근속연수 계산 기준 이관

**사내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상세 내용
(2/2)**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p>제4조(퇴직금 계산) ① <u>사장 및 사내이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u> 1~2. 생략 ②~③ 생략 ④ 회계년도 중간에 <u>사장이나 사내이사</u>가 취임하거나 퇴임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대하여는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u>⑤ <신 설></u></p>	<p>제4조(퇴직금 계산) ① <u>임원</u>-----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임원이</u> ----- ----- ⑤ <u>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의 퇴직금은 매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월 기본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300%를 곱한 금액을 입금함으로써 지급에</u> <u>같음한다.</u></p>	<p>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 범위 변경</p> <p>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방법 관련 내용 추가</p>
<p>제6조(지급제한) 임기 중 자발적 사임 또는 정당한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u>사장 및 사내이사</u>는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p>	<p>제6조(지급제한)----- -----<u>임원은</u>----- -----.</p>	<p>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 범위 변경</p>
<p>제8조(규정개정) 이 규정은 <u>주주총회 및 이사회</u>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한다.</p>	<p>제8조(규정개정)-----<u>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u>----- -----.</p>	<p>자구수정</p>
<p><u><신 설></u></p>	<p><u>부 칙 (2026.3.26)</u> <u>(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u></p>	

04 사외이사 노환용 선임의 건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 Pool을 대상으로 외부인선자문단의 심사과정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KT&G Board Skills Matrix에 최적합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제4호 사외이사 노환용 선임의 건」에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사외이사 후보



성명 : 노환용

- 출생년월 1956.04
- 성별 남성
- 구분 사외이사 후보
- 임기 2026년 정기주총일 익일
~2029년 정기주총일
- 전문분야 Manufacturing/Supply chain,
Risk Management,
Global Business, Sustainability,
Consumer Industries등
- 선임 구분 신규선임
- 추천인 KT&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1.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노환용 후보자는 LG전자에서 B2C와 B2B 사업을 모두 경험한 전문경영인으로, LG전자 사장(2010~2015)으로 재직하면서 대규모 상장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2010~2020)을 3연속 역임하면서 업계를 대변하고 업계 발전에 공헌한 바 있습니다.

2. 제조/공급망 및 해외시장에 대한 전문성

노환용 후보자는 30년 이상 LG전자에 재직하면서 구매, 생산, 물류, 상품기획, 개발, 영업, 마케팅 등 제조업 밸류체인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사업본부를 이끌면서 시장의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8개의 해외 공장을 설립/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공급망과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장에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 노력의 결과, 2006년 대한민국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3. 직무수행에 적합한 책임감과 윤리의식

노환용 후보자는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공정한 협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공조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한 규칙을 만들고 냉매, 공해, 탄소배출 이슈 등 환경 관련 법안 및 글로벌 ESG 대응을 위한 선행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요건

노환용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규정된 독립성 기준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의 직/간접적 또는 우호적 관계 등이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후보자로 판단됩니다. 독립성을 보유한 해당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경영진을 엄중하게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KT&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05 감사위원회 위원 노환용 선임의 건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와 당사 정관 제34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제5호 감사위원회 위원 노환용 선임의 건」에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성명 : 노환용

- 출생년월 1956.04
- 성별 남성
- 구분 사외이사 후보
- 임기 2026년 정기주총일 익일
~2029년 정기주총일
- 전문분야 Manufacturing/Supply chain,
Risk Management,
Global Business, Sustainability,
Consumer Industries등
- 선임 구분 신규선임
- 추천인 KT&G 이사회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1.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노환용 후보자는 LG전자에서 B2C와 B2B 사업을 모두 경험한 전문경영인으로, LG전자 사장(2010~2015)으로 재직하면서 대규모 상장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2010~2020)을 3연속 역임하면서 업계를 대변하고 업계 발전에 공헌한 바 있습니다.

2. 제조/공급망 및 해외시장에 대한 전문성

노환용 후보자는 30년 이상 LG전자에 재직하면서 구매, 생산, 물류, 상품기획, 개발, 영업, 마케팅 등 제조업 밸류체인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사업본부를 이끌면서 시장의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8개의 해외 공장을 설립/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공급망과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장에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 노력의 결과, 2006년 대한민국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3. 직무수행에 적합한 책임감과 윤리의식

노환용 후보자는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공정한 협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공조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해 힘써 바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한 규칙을 만들고 냉매, 공해, 탄소배출 이슈 등 환경 관련 법안 및 글로벌 ESG 대응을 위한 선행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요건

노환용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규정된 독립성 기준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의 직/간접적 또는 우호적 관계 등이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후보자로 판단됩니다. 독립성을 보유한 해당 후보자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감사위원회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06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승수 선임의 건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 Pool을 대상으로 외부인선자문단의 심사 과정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KT&G Board Skills Matrix에 최적합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제6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승수 선임의 건」에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성명 : 한승수

- 출생년월 1970.02
- 성별 남성
- 구분 사외이사 후보
- 임기 2026년 정기주총일 익일
~2029년 정기주총일
- 전문분야 Finance/Accounting,
Risk Management 등
- 선임 구분 신규선임
- 추천인 KT&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1.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한승수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2025)을 비롯하여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2018~), 한국회계학회 부회장(2024~)을 역임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2. 회계 전문가로서의 역량 보유

한승수 후보자는 회계 전문가로서 일리노이대학교 회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9년부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와 회계정책 결정구조를 다루는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감사, 재무 감독 기능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LG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을 역임중이며 국내 주요 회계학회 및 정책위원회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적 깊이와 제도적 응용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3. 직무수행에 적합한 책임감과 윤리의식

한승수 후보자는 재무공시 및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중심 회계 및 투명성을 연구하여 회계정보 왜곡 리스크, 성과연계 보상구조 등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슈를 식별하고 해결하는데 윤리기반의 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서로 'ESG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경영'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 등에서의 정책위원 활동으로 책임과 공공성 기반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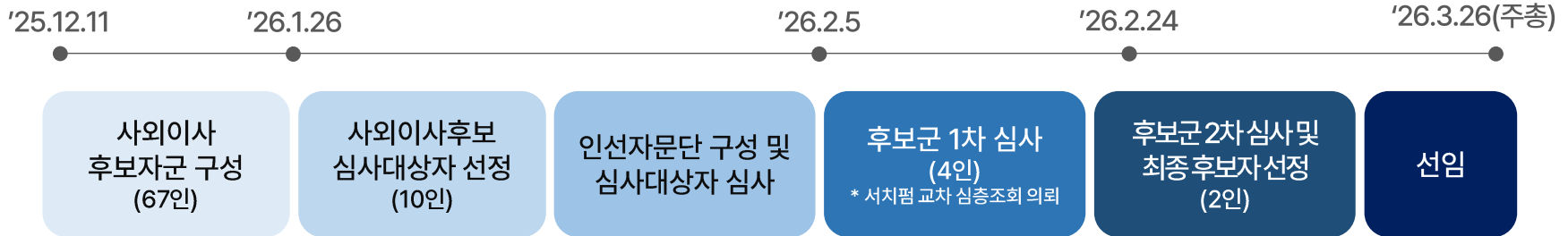
한승수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규정된 독립성 기준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의 직/간접적 또는 우호적 관계 등이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후보자로 판단됩니다. 독립성을 보유한 해당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경영진을 엄중하게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진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KT&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

100%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KT&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복수 외부 기관(서치펌)의 추천을 통하여 후보자군(Pool)을 구성하고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외부 인사전문단의 심사 평가의견 및 서치펌 교차 심층 평판조회 등 객관적 심사과정**을 거쳐 KT&G BSM에 최적합한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선임 프로세스

KT&G BSM 기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외이사후보 추천 프로세스



사외이사 선임 관련
위원회 현황

관련 위원회와 이사회는 전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전문단」 운영

외부인사전문단	지배구조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전원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 외부 전문 서치펌 추천 인사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전원 사외이사 (기능) 사외이사후보 심사기준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전원 사외이사 (기능) 사외이사 후보자군 심층 심사 최종 사외이사 후보 선정/추천

[참고] KT&G 이사회 역량 지표 및 필요 역량 현황

이사회는 본업 경쟁력 강화의 중장기 전략 방향 및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여 이사회 역량지표(BSM: Board Skills Matrix)에 기반하여 향후 이사회 필요 역량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Manufacturing/Supply Chain, Finance/Accounting, Risk Management, Global Business**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경험 및 전문성	손관수	이지희	곽상욱	손동환	방경만 (CEO)	이상학 (사내)	KT&G 이사회 추천 후보	
							노환용 (신규선임)	한승수 (신규선임)
Senior Executive Leadership (8/8)	●	●	●	●	●	●	●	●
Manufacturing/Supply chain (2/8)	●						●	
Finance/Accounting (3/8)					●	●		●
Risk Management (5/8)	●				●	●	●	●
Global Business (4/8)	●	●			●		●	
Sustainability (4/8)		●			●	●	●	
Consumer Industries (5/8)	●	●			●	●	●	
Legal/Regulatory (3/8)			●	●		●		
독립성 (75%)	●	●	●	●			●	●
성별 (여성비율 13%)	남	여	남	남	남	남	남	남

★: Top Skills/Expertise

0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30조에 의거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한도**를 다음과 같이 승인 받고자 하오니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이사 보수한도

(단위: 백만원)

보수한도		6,000
이사의 수		8명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2025년 이사 보수한도 및 실지금액

(단위: 백만원)

보수한도		5,000			
지급 총액(A+B)		2,445			
	구 분	급여	성과급	기타	합계
사내이사(A)	대표이사 방경만	624	839	20	1,483
	사내이사 이상학	329	-	6	335
사외이사(B)	사외이사 고윤성 외 5명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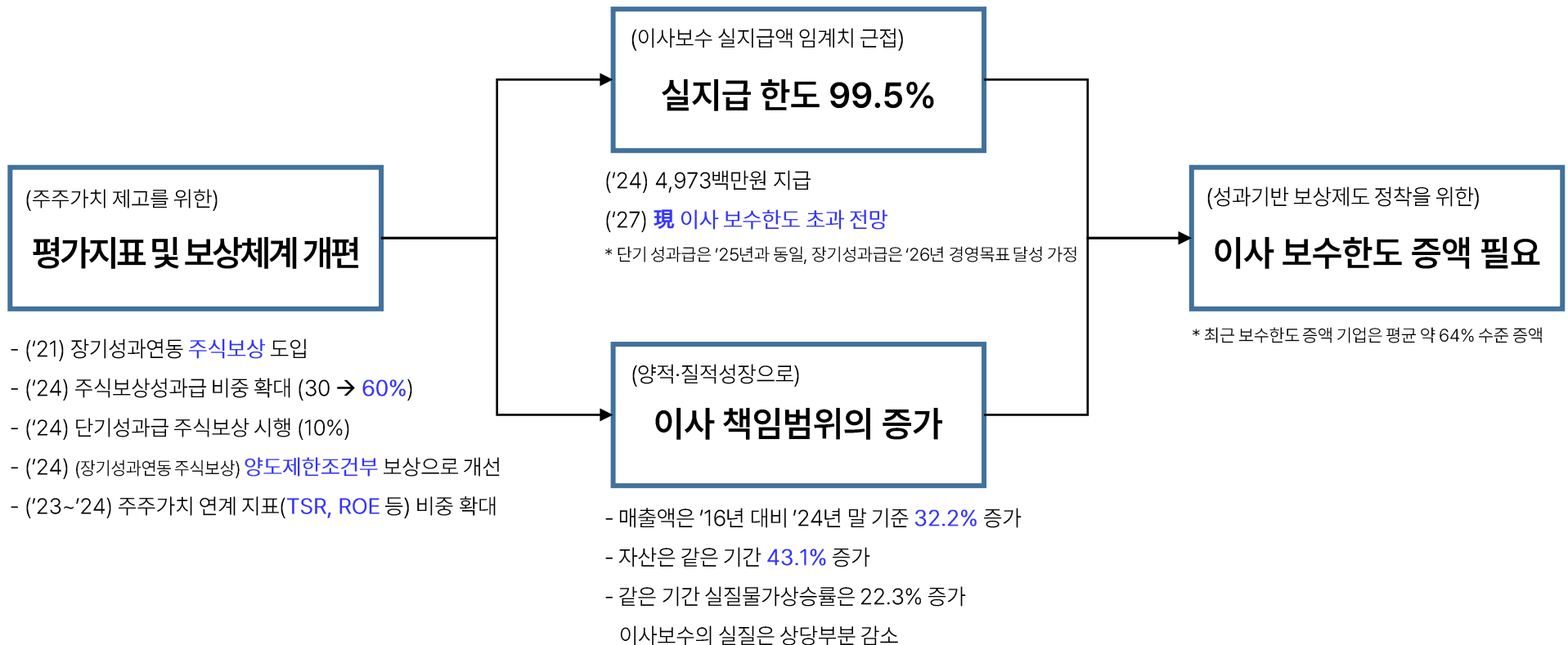
* 보수총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할 모든 이사에게 지급된 총 금액임. 사내이사 보수총액에는 2025년 3월 27일자 신규선임된 사내이사의 2025년 4월 ~ 12월 지급액이 포함되어있음 (1~3월 미등기임원 당시 지급액은 제외)

[참고] 이사 보수한도 변경 필요성

성과기반 보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KT&G의 성장에 맞는 이사 보수한도 현실화가 필수적입니다.** ('17년 이후 동결)

- 상법개정에 따른 이사책임 강화, 주주가치 제고 보상체계 개편에 부합하는 보수한도 설정 필요 ('27년 지급 예상액 고려시, 보수한도 증액 불가피)
- KT&G 이사 보수한도는 시가총액 대비 0.03%이며, 이는 주요소비재 기업의 평균인 0.47%, 시가총액 유사기업 평균인 0.06%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주주가치 연계 보수한도 상향 필요성



08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승인의 건

회사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자, **기보유 자기주식 전량 소각 및 장내 신규매입을 통한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을 포함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를 승인 받고자 하오니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구분	내용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 목적	기보유 자기주식(10,866,189주) 전량 소각 후,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신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예정		
보유또는처분 대상이되는 자기주식의종류와수 및취득방법	항목	보유 대상*	처분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최대 30,000주**	보통주 최대 30,000주**
	취득방법	장내직접취득	
<small>* 임직원별 인사 평가 결과 및 보상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수량이 결정될 예정이며, 처분 시점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된 처분 예정 주식 수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하여 처분 예정(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장내 매입) ** 최근 2년간 실제 임직원 보상 지급주식수를 고려하여 산정</small>			
보유개시시점및예정된처분시점기준 자기주식현황	항목	보유 대상*	처분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 취득 방법	보통주 최대 30,000주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장내매입	0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최소 103,780,456주	보통주 103,810,456주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약 0.03%	0%
<small>* 보유 개시시점의 자기주식 현황은 본 계획서의 주주총회 승인일 기준 예상되는 최대 보유 및 처분 대상주식 수인 30,000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임직원 인사 평가 완료 및 보상 규모 확정으로 인해 실제 취득 및 처분 자기주식수가 달라지는 경우 변동될 수 있음 ** 처분시점에는 임직원 보상을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 전부를 처분하게 될 예정이므로 해당 시점에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없음</small>			
예정된보유기간	임직원 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시점까지 보유 예정		
예정된처분시기	임직원 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시점에 처분 예정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성과 평가가 완료되고 보상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		

※ 제8호 의안은 기업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6966)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 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

